회 계 규 정

제정 : 1996. 4. 12.
개정 : 1998. 6. 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하“병원”이라 칭한다.)의 공정 타당한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병원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회계년도) 병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로 한다.

제4조 (회계년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년도를 정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년도를 정한다.

제5조 (회계원칙) 병원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 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두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병원회계준칙과 기업회계준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회계준칙·기업회계준칙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손 익 계 산 서

제8조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의료이익, 경상손익, 법인세 차감전순손익 및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 하여야 한다.

제9조 (손익계산의 구분) 손익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의료이익은 그 기간에 속하는 의료수익에서 의료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경상손익은 의료손익에 의료외수익을 가산하고 일반관리비 및 의료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4.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0조 (의료미수금청구액의 소멸) ① 보험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삼자단체에 의하여 지불되는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의료미수금의 일부가 삭감될 경우에는 일단 의료미수금청구액이 잘못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제삼자단체의 심사가 완료되어 수납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을 상계처리한다.

② 삭감된 의료미수금중 제삼자단체에 이의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수납 될

경우에는 수납될 시점에 의료수익이 수납액만큼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제11조 (진료비감면의 처리) 병원 직원의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하여 사전에 정한 할인율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으로서 의료수익의 감액분을 의료수익조정계정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12조 (매입대금할인의 처리) 한방약품이나 진료재료등의 매입조건이나 대금 지불조건등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대금의 할인액은 의료외 수익으로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 13조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 손익계산서 표준양식은 병원회계준칙 양식을 준용한다.

제 3 장 대 차 대 조 표

제14조 (대차대조표의 작성원칙)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한다.
2.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3.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및 고정성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된다.
5.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다.

제15조 (자산의 평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평가는 취득 또는 증여받았을 때의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 되는 가격으로 한다.

③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 또는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의 평가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은행법의 규정 등에 의한 금융기관, 공인감정사의 감정 가격 또는 정부에서 공표하는 시가표준액 등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 차관 등 외화차입금을 가지고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16조 (자산의 재평가) 자산의 재평가 방법 및 재평가 차액 등의 회계처리 요령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법인세가 면제 또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감정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여 임의로 할 수 있다.

제17조 (의료미수금의 평가) 의료미수금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단, 사용 유효기한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약품등의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 감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19조 (고정자산의 회계처리) 취득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1건당 금액이 상당한 금액 이상이고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사업목적을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획득한 자산의 경우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자산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상당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20조 (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건물은 정액법, 그외에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연도 중에 감가상각은 8월과 2월 2회로 상각한다.

제21조 (외화부채의 평가) ① 외화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한국은행이 고시한 한율로 환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은 당기수익 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2조 (자본) 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으로 분류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분류한다.

③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기타자본잉여으로 분류한다.

제23조 (대차대조표의 양식) 대차대조표 표준양식은 기업회계기준 양식을 준용하여 전산프로그램 양식에 따른다.

제 4 장 결 산

제24조 (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자금계산서
2. 운영계산서
3.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 잉여금처분계산서

5. 결산 부속서류
6. 재고자산 명세서
7. 감가상각비 명세서

제25조 (결산 부속명세서)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 및 예금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의1호서식
2. 유가증권 명세서
3. 미수금명세서
4. 재고자산명세서
5. 대여금명세서
6.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의6호서식(가)]
7. 전신전화가입권명세서
8. 선급법인세 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의4호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의7호서식]
10. 감가상각충당금명세서
11. 예비비비사용액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의2호]
12. 매입채무명세서
13. 차입금명세서
14. 미지급금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의9호서식]
15. 기본금명세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의14호서식]
16. 수입금액명세서
17. 일반관리비명세서
18. 세금과공과명세서(일반관리비)
19. 보험료명세서(일반관리비)
20. 의료경비명세서
21. 세금과공과명세서(의료경비)
22. 보험료명세서(의료경비)

제26조 (자금계산의 원칙) 병원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금계산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제28조 (자금계산의 방법) ① 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 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9조 (미사용이월자금) 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30조 (운영계산의 원칙) 병원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계산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제32조 (운영계산의 방법)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운영비용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비용, 기본금 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대체액은 당해 회계연도중의 고정자산 구입 등 비운영 지출에 대응한 설립자기자본금대체액, 법인대체액, 제적립금대체액 및 기타 기본금대체액으로 표시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운영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 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8 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규정) 이 규정에 나타나지 않은 규정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병원회계준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